



『동작휴양소』 이용 협약서

안성시시설관리공단(소재지 :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162)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휴양시설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합니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상기 기관 간의 태안군 안면읍 소재 동작구휴양소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

본 협약의 적용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다.

- 명칭 : 동작휴양소
- 위치 :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신로 343(신야리 123-2)

제3조(이용범위)

- ① 본 협약에 의한 이용 범위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.
- ② 제 1항의 가족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이용하고 동반하는 가족을 말한다.

제4조(이용요금)

본 협약에 의한 이용자에게는 “동작구 주민 이용료” 를 적용한다.
단, 성수기 기간(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)에는 제외한다.

제5조(이용방법)

제3조의 이용자가 본 협약에 의한 이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직원신분증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용 시에는 이용 대상시설의 이용방법과 준수사항을 사전숙지 후 따라야 한다.

제6조(협약기간)

- ① 본 협약의 기간은 양 기관의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③ 협약기간은 2019년 5월 1일 ~ 202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.
- ② 협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가 없을 때에는 협약기간을 자동 연장한다.

제7조(기타)

-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과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대표가 서명(날인)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. 4. 30.

안성시시설관리공단

동작구시설관리공단

이사장 최갑선 (인)

이사장 김봉현 (인)

